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2일,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축조심사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0.) 상정

제4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1.27.) 상정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1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충권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명현)

개정안은 제3조제1항은 원안위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대통령 임명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안 제5조제2항),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이와 같이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경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실질적 업무 조율과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조직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 ②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며 국제적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원자력 안전관리 및 규제기능에 대해 현재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수 부처 간 조정을 통한 종합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유지(국무총리 소속)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개정안 제3조제2항은 원안위의 독립성 강화와 원안위 소관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개정안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

제하여 원안위의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의 지위를 분리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별도로 임명하도록 변경하되, 현행과 동일하게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할 경우, 원안위 사무처 업무관리가 효율화되고, 원안위 안전에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정부위원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보여짐.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위원회 수행 기능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확대 및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원안위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기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정부 내 통일된 입장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부칙 제4조는 원안위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의 내용에 맞추어, 현행 관련 법률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 중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문구가 개정안 내용에 빠져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최형두)

개정안 중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는 내용만을 반영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중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하는 내용만을 반영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대통령”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상임위원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은”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은 대통령이”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로 한다.

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u>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u>대통령</u> ----- ----- ----- -----. ②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u>국무총리</u> ----- ----- ----- -----. ② (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u>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u>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생 략) ② <u>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u>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생 략) 제17조(사무처) ①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임위원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u>----- ----- -----.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장은 대통령이</u>-----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상임위원은</u>----- ----- -----. 제5조(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u>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u>----- -----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사무처) ① (개정안과 같음)
---	---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③ (생략)

② -----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3개
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및 계
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전의 「생활주
변방사선 안전관
리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
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
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

② -----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법」, 「원자력안전법」 및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처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사무처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
에 따른 사무처
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

정) 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
다.

제9조제4항 중
“총리령”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규칙(이
하 “위원회규칙”이
라 한다)”으로 한
다.

제9조제6항, 제10
조제3항, 제12조제2
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전단,
제18조의2제3항, 제
20조의2제1항·제2
항, 제21조제1항제6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 원자력시설 등
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리령”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규칙(이
하 “위원회규칙”이
라 한다)”으로 한
다.

제9조제2항, 제9조
의2제3항, 제9조의3
제1항, 제11조, 제1
2조제2항제2호, 제1
3조제2항 단서, 같
은 조 제3항, 제14
조, 제20조제1항 단
서·제2항 단서, 같
은 조 제4항, 제21
조제2항, 제29조제3
항, 제32조제5항,
제35조제2항, 제35

조의2제2항 · 제5항
· 제6항, 제37조제3
항 및 제42조제2항
제4호 중 “총리령”
을 각각 “위원회규
칙”으로 한다.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총리령”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규칙(이
하 “위원회규칙”이
라 한다)”으로 한
다.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 제
4항 · 제5항 및 제1
1조제1호 중 “총리
령”을 각각 “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이하 “위원회
규칙”이라 한다)”을
“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
5조제1항 단서, 제1
5조의2 전단, 제15
조의4제5항, 제18
조,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
5조,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
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
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
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
1조제2항, 제35조제
1항 단서 ·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
항, 제36조제1항제1
호, 제39조,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 제2항 전단 ·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제1호 ·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1조제1항 본문,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항 제1호, 제67조, 제68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0조 제2항 · 제4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본문

· 단서, 같은 조 제 2항, 제77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의2, 제94조제2호 ·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3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총리령”을 각각 “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④ 법률 제19826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3항, 제88조제1항 · 제2항 및 제88조의2제

	<u>2항 중 “총리령”을</u> <u>각각 “위원회규칙”</u> <u>으로 한다.</u>	
--	--	--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2.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u>
4. (생략)	4. (현행과 같음)